

운영규정의 개요

◎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및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

- 1) 본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.
(단, 장기요양 인정서의 인정유효기간을 따를 수 있습니다.)
 - 본 계약에 대해서 양자 간의 이의가 없을 때는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합니다.
(단, 장기요양 인정서의 인정유효기간을 따를 수 있으며 쌍방 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계약만료 2개월 전에 계약 변경의 필요성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합니다.)
- 2) 보호자는 입소관련 계약사항을 성실히 지키며 월1회 이상 방문하여 보호자로서의 의무를 다합니다
 - 입소(이용)자는 지켜야 할 제반 규칙을 충실히 준수합니다.
 - 과실 또는 부주의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 및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주장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.
 -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파손 및 비품 등을 망실, 훼손 했을 때는 보호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합니다.
- 3) 입소(이용)자는 아래의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기간 중이라도 퇴소할 수 있습니다.
 - 본인이나 가족이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
 - 회복이 어려운 위독한 병(전염병 등)이 있을 경우
 - 입소비용(본인 부담금)을 3회 이상 계속 연체 할 경우
 - 기타 운영자가 공동가정생활이 부적절 하다고 인정되어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퇴소를 명하는 경우

◎ 기타정보 (필요시 의료시설 이용 등)

- 1) 요양보호사, 간호조무사 등이 어르신들을 보호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 어르신들을 위한 화재보험 및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.
- 2)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의뢰한 피학대 노인이나 기초생활 수급자 중 부양자가 없어 시설입소가 반드시 필요한 분에 대해서는 시, 군, 구청장이 판단하여 노인요양시설로 입소조치 가능합니다.
- 3) 본 기관은 개인 정보를 철저히 관리하며 다용도로 사용 등 외부유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.
- 4) 입소인이 질병이나 부상한 경우 또는 시설이 정한 의사의 진단에 의해 치료를 필요로 하는 때는 약물치료의 요양 또는 물리치료 등 시설 자체의 가능한 치료는 시설장의 책임 하에 실시하기로 하고 중환자 또는 수술을 요하는 질환일 경우는 입소인 및 신원인수인과의 상담을 통해 신원인수인의 책임 하에 시설의 지정병원 또는 각자의 선택에 의한 기타 의료센터 등에서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.

◎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자격 및 절차

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(치매, 뇌혈관성 질환, 파킨슨병 등)을 가진 분은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하여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을 받아 장기요양 인정서와 함께 요양급여 이용계약 및 요양급여 제공을 받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시면 됩니다.

◎ 국민건강보험공단 TEL.1577-1000 ◎ 국민건강보험공단 **안성**지사 TEL. (031) - (8056) - (0289)

입소정원	현재 입소인원			입소가 가능 인원	예약대기자 인원		
	남성	여성	합계		남성	여성	합계
11 명	명	11 명	명	· 명	· 명	· 명	· 명